

『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및 공공시설 요금감면 등 상위법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
-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사편찬위원회조례」 외 9건의 어려운 한자어 정비

용어	순화어	용어	순화어	용어	순화어
부책(簿冊)	문서	통리(統理)하다	총괄하다	여타(餘他)의	그 밖의
상오(上午), 하오(下午)	오전, 오후	폭원(幅員)	너비	미연(未然)에	미리
양양(昂揚)하다	드높이다	호창(呼唱)하다	부르다		

- 공공요금 미반환을 원칙으로 잘못 규정한 「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외 1건 정비
-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감면대상에서 누락한 「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외 6건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,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조례상의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용어로 개선하고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및 공공시설 요금감면 등 상위법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쉬운 용어로 순화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,
- 행정안전부의 ‘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’에 의거, 공공시설 사용료 등 공공요금 미반환을 원칙으로 잘못 규정한 조례에 대해 구체적인 반환사유를 규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으로 인한 위법·소극행정을 예방하고 반환청구권 등 주민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- 또한, 국가보훈처의 ‘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’에 따라 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공공시설 의무감면이 누락된 부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